

법무상식 2020년 7월 통권 제333호

www.jeonnam.go.kr

CONTENTS

2	새로운 판례
11	법령해석사례(법제처)
33	행정심판 재결사례
45	행정소송 판결사례
54	생활법률 상담사례
66	법무단신
81	최근 개정 시행법령
86	최근 제정 자치법규
105	솔로몬의 재판

새로운 판례

●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3조 제1항의 공범으로 처벌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16도3048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이라 한다) 제91조, 제43조 제1항]. 여기서 처벌되는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2호).

노동조합법 제91조, 제43조 제1항은 사용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채용 또는 대체되는 자에 대하여 위 법조항을 바로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음은 문언상 분명하다. 나아가 채용 또는 대체하는 행위와 채용 또는 대체되는 행위는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음에도 채용 또는 대체되는 자를 따로 처벌하지 않는 노동조합법 문언의 내용과 체계, 법 제정과 개정 경위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사용자에게 채용 또는 대체되는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범 규정을 적용하여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이른바 대향범에 관한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451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994 판결 등 참조).

☞ 여수 산단 소재 중장비 임대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파업기간 중에 위 업체에 채용되어 기중기 운전 작업을 대체 수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붙잡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져 어금니 탈구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해자는 정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근로자에 불과하므로, 대항범 관계에 있는 행위 중 ‘사용자’만 처벌하는 노동조합법 제91조, 제43조 제1항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없고, 형법 총칙상 공범 규정을 적용하여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는 노동조합법 제91조, 제43조 제1항 위반에 따른 현행범인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체포하려던 당시 상황을 기초로 보더라도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검사 및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때에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하여 주문에서 상소를 기각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 대법원 2019도17995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때에는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해서는 판결이유 중에서 그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적으면 충분하고 주문에서 그 상소를 기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59. 7. 31. 선고 4292형상327 판결 참조).

☞ 피고인과 검사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심은 판결이유 중 ‘피고인 허○○의 강제추행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톡톡 쳤다고만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검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를 배척한 다음,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면서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표시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원심이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검사의 항소가 일부 이유 있다는 원심 판단 속에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 원심이 판결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 (1)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정한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적극)

(2) 실질적 개설자인 비의료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

* 대법원 2018두37250

(1)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라고 보는 것이 옳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참조). 한편, 종전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만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3. 5. 22. 신설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규정하여 비의료인 개설자에 대한 부당이득징수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 역시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

(2)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참조). 따라서 실질적 개설자인 비의료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히 이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 비의료인 개설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점 및 그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비의료인 개설자에게 귀속된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실질적 개설자인 원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위 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사건임. 의료기관의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실질적 개설자인 비의료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히 이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 비의료인 개설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점 및 그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비의료인 개설자에게 귀속된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기록과 원심판결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 볼 때 위와 같은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선형상병의 치유 후 다시 증상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후형상병이 발병하여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재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후형상병의 치유 시점에 장애급여청구권을 새로 취득하고, 그때부터 장애급여청구권의 시효가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20두31774

선형상병인 ‘우안 각막 화학 화상’의 발병 경위나 그 이후의 경과, 이 사건 장애[우안 각막 화학 화상, 우안 안내염 및 우안 망막 박리를 원인으로 한 시각 장애(우안, 광각유)] 발병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선형상병이 선형요양 종결일에 일단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우안 망막 박리’ 등의 상병이 발병하여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해해자가 적절한 시점에 ‘우안 망막 박리’ 등에 관하여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아 실제 재요양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안 망막 박리’ 등에 관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된 시점에 ‘재요양 후의 장애급여청구권’을 새로 취득하고,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원고의 남편은 2005년 7월 22일 사고로 인하여 우안 각막 화상을 입고, 2005년 9월 30일까지 요양을 받았으며,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우안 백내장, 우안 안내염, 우안 유리체 출혈 및 우안 망막박리 등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8년 2월 2일 우안 실명에 해당하는 시각 장애(우안, 광각유) 장애진단을 받았음.

☞ 원고의 남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급여청구를 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선형상병인 ‘우안 각막 화학 화상’이 그 요양 종료일인 2005년 9월 30일에 치유되었고,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장애급여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애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음.

- ☞ 이에 대하여 원심은 선행상병이 2005년 9월 30일 완치되었고, 선행상병에 관한 장애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치일 다음날부터 진행되는데,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후 장애급여청구를 하였으므로, 장애급여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
- ☞ 대법원은 선행상병의 발병 경위나 그 이후의 경과, 이 사건 장애 발병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선행상병이 선행요양 종결일에 일단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다시 후행상병이 발병하여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음.
- ☞ 그에 따라 피해해자가 적절한 시점에 후행 상병에 관하여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아 실제 재요양급여를 받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후행 상병에 관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된 시점에 ‘재요양 후의 장애급여청구권’을 새로 취득하고,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장애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1)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관하여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이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 대법원 2019다292026

- (1)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이자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피해자가 그 원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다. 따라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원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2)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에 의한 공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반면에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가해자에 의한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손해발생의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적어도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여전히 부담한다.

- ㉔ 경마공원에 인접한 화훼농가의 운영자인 피고들이 분재와 화훼가 말라죽자 원고가 운영하는 경마공원에서 사용한 소금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 경마공원의 경주로에 뿌린 소금이 지하수로 유입되어 피고들이 사용하는 지하수 염소이온농도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법령해석사례(법제처)

사례 1

경찰청 - 불심검문 시 경찰관이 제시해야 하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에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이 포함되는지 여부(「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등 관련)

질의요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경찰공무원인 경찰관(이하 “경찰관”이라 함)(각주: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전제함.)이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이하 “불심검문”이라 함)할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시해야 하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에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도 포함되는지?

회 답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경찰관이 불심검문 시 제시해야 하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에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4항에서는 경찰관은 같은 조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같은 법 제3조제4항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고 하여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할 때에는 공무원증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증을 갈음할 수 있는 증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4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공무원증)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증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인쇄 보안기술을 보유하는 기관 등을 정하여 공무원증을 제작하게 할 수 있으며(제57조제3항), 공무원증은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을 따라야 하고(제58조),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원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해야 하고(제59조제1항), 공무원증을 분실한 공무원은 주의·경고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증 관리 및 사용을 부적절하게 한 공무원은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제62조제1항·제2항).

이와 같이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무원증의 제작, 휴대 및 패용, 관리 등에 대해 법령으로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점과 공무원증 대신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이나 사본 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이나 내용 및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이나 사본 등의 신뢰성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율할 사항임을 고려할 때,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로 공무원증을 제시하도록 하면서 공무원증을 갈음할 수 있는 증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 때 제시해야 하는 증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발급된 공무원증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4항에서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에게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인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제시하도록 한 것은 그 검문행위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경찰활동임을 검문 받는 사람에게 알리려는 것임과 아울러, 검문 받는 사람이 해당 검문행위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거나 위법한 불심검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요한 수단으로써 불심검문을 하는 사람이 경찰관인지 여부 및 그 소속과 성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제시받는 경우에는 추가로 해당 이미지파일의 위조·변조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한 자신을 불심검문하는 사람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경찰관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도 공무원증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해당 규정을 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로서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불심검문 시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 검문 받는 사람이 충분히 알았다면 해당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례(각주: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례 참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른 공무집행으로서 불심검문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것으로 공무원증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한 해석과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해당 판결례를 이유로 공무원증에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도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 ⑦ (생략)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5조(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3조제4항 및 법 제7조제4항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

〈관계 법령〉

사례 2

민원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범위(「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등 관련)



질의요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괄호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의 범위에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직상 수급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각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체불 사업주”에는 해당하지 않는 자를 전제함.)가 포함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직상 수급인의 범위에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직상 수급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체불 임금등(각주: 「근로기준법」 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하며, 이하 같음.)과 체불 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절차 및 발급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제2호에서는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등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 같은 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하면서, 체불 사업주에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업주에 관한 사항은 “체불 사업주” 자체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에 관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이하 “건설사업자”라 함)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각주: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함.)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제1항)고 규정하면서 직상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여 건설업의 경우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에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건설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한정되는 것이 문언 상 명백(각주: 법제처 2018. 1. 22. 회신 17-0663 해석례 참고)하므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직상 수급인이라고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니라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체불 사업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근로기준법」 제44조 및 제44조의2의 관계를 고려하여 체불 사업주의 범위에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제2호의 체불 사업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법률구조법」 제22조의 법률구조 지원절차 등에 따라 소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1항의 근로자 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발급절차 및 발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과 체불 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불 임금등과 체불 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3일 이내(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근로감독사무 처리를 완료한 날부터 3일 이내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체불 임금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체불 근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나. 근무기간

다. 체불 기간 및 임금등

라. 그 밖의 체불 금품 내역 및 금액

2. 체불 사업주(「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나. 사업자등록번호

다.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라. 사업의 종류 및 사업기간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관계 법령〉

사례 3

민원인 - 아마추어국이 비상·재난구조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유·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중계통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전파법」 제31조 등 관련)

질의요지

「전파법」 제31조제4항에서는 아마추어국(각주: 「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7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무선설비에 유·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비상·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마추어국은 비상·재난구조를 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해 유·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중계통신을 할 수 있는지?

회 답

아마추어국은 비상·재난구조를 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해 유·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중계통신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전파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는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방송 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함)를 “무선국(無線局)”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2호에서는 무선국이 하는 업무의 종류 중 하나로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무선기술의 흥미에 따라 하는 자기훈련과 기술연구 목적의 통신업무인 “아마추어업무”를, 같은 영 제29조제1항제27호에서는 무선국 종류의 하나로 개인적인 무선기술에의

흥미에 따라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 전용하는 무선국인 “아마추어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파법」 제31조제3항에서는 아마추어국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본문), 예외적으로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통신이나 비상·재난구조를 위한 통신은 할 수 있도록 규정(단서)하여, 비영리적인 목적과 내용에 한해 아마추어국의 제3자를 위한 통신을 예외적으로 허용(각주: 1998. 9. 15. 의안번호 제151179호로 발의된 전파법 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비상·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추어국이 유·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중계통신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비상·재난구조를 위한 경우로 한정하여 유사시 비상통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각주: 1998. 9. 15. 의안번호 제151179호로 발의된 전파법 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입니다.

이처럼 「전파법」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제3자를 위한 통신”과 “중계통신”을 구분하여 규정한 것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의 경우 통신하는 주체가 아마추어국 자체인 반면 중계통신의 경우 아마추어국이 중계국이 되어 다른 무선국의 통신을 전달하는 것으로 통신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나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전파법」 제31조제3항에서 규율하는 “통신”에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율하는 “중계통신”이 포함된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제3자를 위한 통신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경우’ 유·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한 중계통신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같은 조 제3항에서 이미 비상·재난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를 위한 통신은 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재차 같은 목적의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중복하여 규정한 것이 되어 「전파법」 제31조제4항 자체가 무의미한 규정이 됩니다.

또한 전파법령에서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무선국의 분류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고(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31조), 허가증에는 무선국의 종별 및 명칭, 무선국의 목적,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 등을 기재하며(시행령 제33조),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영하는 경우를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등의 제재처분 대상으로 규정(법 제72조제2항제9호)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율 체계를 고려하면 같은 법 제31조제4항에서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비상·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그 밖의 중계통신은 금지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아마추어국은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비상·재난구조를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유·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중계통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아마추어국이 할 수 있는 통신의 범위에 혼란이 없도록 「전파법」 제31조제3항과 제4항의 “제3자를 위한 통신”,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통신” 및 “중계통신”의 개념과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파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파”란 인공적인 유도(誘導) 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말한다.

2. ~ 4의5. (생략)

5. “무선설비”란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

5의2. (생략)

6. “무선국(無線局)”이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한다. 다만, 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7. ~ 17. (생략)

② (생 략)

제20조의2(무선국의 개설조건) ① ~ ② (생 략)

③ 무선국이 하는 업무와 무선국의 분류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실험국 등의 통신) ①, ② (생 략)

③ 아마추어국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통신이나 비상·재난구조를 위한 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비상·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

전파법 시행령

제29조(무선국의 분류)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 26. (생 략)

27. 아마추어국: 개인적인 무선기술에의 흥미에 따라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 전용하는 무선국

28. ~ 43. (생 략)

② (생 략)

〈관계 법령〉

사례 4

경기도 가평군 - 토지사용승낙의무이행의 확정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을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제1호다목 등 관련)

질의요지

산지를 공유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토지사용승낙의무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각주: 확정판결문에 토지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전제함.)을 받은 경우, 해당 확정판결문 및 송달·확정증명원(이하 “확정판결문등”이라 함)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산림청장등(각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제출해야 하는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확정판결문등을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하는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유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전용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산지전용허가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다목에서는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를 규정하고 있으나,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유 산지의 경우 해당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반드시 공유자의 토지사용승낙 동의서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둘 이상이 공유한 산지의 사용에 대한 권리는 해당 산지의 사용에 대한 공유자의 의사표시 등에 따라 취득할 수 있고, 「민법」 제389조제2항에 따르면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263조제1항에서는 의사(意思)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토지사용승낙의무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산지의 공유자가 토지의 사용승낙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확정판결문등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각주: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4538 판결례 참조)

만약 이와 달리 이 사안의 확정판결문등을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없다면, 공유 산지의 사용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하여 승소하더라도 소송의 상대방이 그 의무에 반하여 사용승낙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사용승낙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의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389조제2항 및 「민사집행법」 제263조제1항에 반하게 되고, 정당한 사용·수익권을 가진 자의 권리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③ (생략)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생략)

②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나. (생략)

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라. ~ 카. (생략)

2. ~ 3. (생략)

③ ~ ⑦ (생략)

〈관계 법령〉

사례 5

해양수산부 -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승인 등이 의제되는 경우 매립지 가격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업자 지정 주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등 관련)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1 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28조 및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이 의제되고, (각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등을 거친 경우를 전제함.)산업입지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의 준공인가로 공유수면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준공검사가 의제되는 경우, 공유수면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 른 감정평가업자는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권자(각주: 산업입지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가 지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각주: 공유수면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관청(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 사)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지정해야 하는지(각주: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관청과 공유수면의 매립면허관청이 다른 경우를 전제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공유수면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이 지정해야 합니다.

이 유

인·허가 의제제도는 복합민원이나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당사자가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관할 행정관청과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것으로, 인·허가가 의제된 경우라고 하여 의제되는 법령에서 정하는 행정권한까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각주: 법제처 2018. 1. 22. 회신 17-0632 해석례 참조)

그런데 산업입지법 제21조제1항제4호 및 제37조제6항에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등을 거친 경우 국가산업단지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와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이 의제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로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준공검사가 의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준공된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산업입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입지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의제된 매립면허 취득자는 공유수면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취득하게 되는데,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및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서는 매립면허취득자의 매립지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매립지 가격산정은 매립면허관청이 지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주체를 “매립면허관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입지법 제21조제1항제4호 및 제37조제6항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준공검사가 의제된 경우라 하더라도,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및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준공된 매립지 소유권 취득과 관련한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주체는 “매립면허관청”으로 보아야 합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

수산부장관(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결정·인가·면허·협의·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1. ~ 3. (생략)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5. ~ 34. (생략)

②·③ (생략)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⑤ (생략)

⑥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21조와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⑧ (생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준공인가신청서를 당해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1. ~ 5. (생략)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등의 내역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 ⑦ (생략)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① 매립면허취득자가 제45조제2항에 따른 준공 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 2. (생략)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조사비, 설계비, 준공사비, 보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 매립면허취득자

4. (생략)

② ~ ④ (생략)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및 총사업비) ① (생략)

② 매립면허취득자가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 해당 매립지의 가격산정은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산정하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이 지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감정평가업자의 지정) ① 매립면허관청은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한 후 신청자 중 추첨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관계 법령〉

사례 6

민원인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가 현금청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시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조합원 지위의 유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4항 등 관련)

질의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12. 28. 법률 제812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6조제2항에 따라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각주: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되었고, (각주: 구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제2호),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조합의 정관에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함.) 이후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재분양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재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이 유

구 도시정비법 제46조제2항에서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조합원인 토지등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조합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함으로써 조합과 조합원 간의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게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각주: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례 참조)

그렇다면 구 도시정비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주택재개발사업의 결과인 주택 공급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고 볼 수밖에 없어 더 이상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할 이유가 없고, (각주: 법제처 2016. 3. 7. 회신 15-0669 해석례 참조) 조합원이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이상 청산절차의 종료 여부와는 상관없이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상실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례 참조)

다음으로 도시정비법 제72조제3항에서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각주: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함.)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정비법이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년 2월 9일 시행되면서 종전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어 정비사업 규모가 변동되는 경우 이미 종료된 분양신청 결과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자 이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예외적으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도록 한 것(각주: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된 도시정비법 개정이유·주요내용 및 2016. 8. 18. 의안번호 제2001642호로 발의된 도시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입니다.

즉 도시정비법이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재분양신청 절차를 신설한 것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 다시 조합가입에 동의할 것을 전제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려는 것(각주: 서울고등법원 2013. 8. 29. 선고 2012나79660 판결례 참조)인바, 해당 규정에 따라 재분양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만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원 지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제5항에 따른 재분양신청을 함으로써 비로소 조합원의 지위가 회복되는 것이며, 이는 구 도시정비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안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12. 28. 법률 제81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생략)

②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② (생략)

③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⑥ (생략)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②、③ (생략)

〈관계 법령〉

행정심판 재결사례

【제2019-329호, 여객자동차법 위반 사업등록 취소처분 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8. 26. 청구인에게 한 여객자동차법 위반(등록대수 미달)에 따른 사업등록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면 ○○리 ○○○에서 (주)○○고속관광(이하 ‘이 사건 전세버스’ 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전세버스 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2019. 1. 31. (유)○○○관광(이하 ‘이 사건 종전 전세버스’ 라 한다) 대표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권과 보유 차량 10대에 대하여 양도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과 이 사건 종전 전세버스 대표는 2019. 2. 12. 피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2. 20. 이를 수리하면서 청구인에게 “제반 법규를 준수할 것”과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대폐차 기간 초과에 대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됨을 분명히 인지한다.”는 점을 조건으로 붙여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7. 30. 이 사건 전세버스가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인 ‘10대 이상’에 미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5조,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2019. 8. 26. 등록대수 미달의 사유로 사업등록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원인이 이 사건 종전 전세버스 대표의 약속 불이행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면서 2019. 10. 21.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8. 26. 청구인에게 한 여객자동차법 위반(등록대수 미달)에 따른 사업등록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 1) 청구인은 2019. 1. 31. 이 사건 종전 전세버스 대표와 전세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권 전부와 보유 차량 10대의 번호판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7,000만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차량 4대만 이전되어서 등록대수 미달로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 2) 자동차 등록대수 미달로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모든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고, 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므로 이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 3) 청구인은 처음부터 등록대수를 속여 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합법적인 계약을 통해 등록대수를 맞추려고 하였는데, 이 사건 종전 전세버스 대표의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한 사건이므로 청구인의 위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응할 준비 기간이나 유예기간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나. 피청구인

- 1)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종전 전세버스 대표와 청구인 간에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 또한 자동차 등록대수가 규정에 미달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언제까지 등록대수 기준에 맞게 차량을 이전하겠다는 구체적인 날짜도 명시하고 있지 않다.
- 2) 이 사건 전세버스가 OO군에 두어야 할 사무실은 폐문부재 상태이고 등록대수 또한 10대 이상인 기준에 미달한 상태인바,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였지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등록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예기간 없이 사업등록을 취소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3) 이 사건 처분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3조(등록기준) 위반으로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 3의 처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4. 관계 법령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제85조, 제86조
- 2)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별표 3
-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3

5. 판 단

가.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청구인과 이 사건 종전 전세버스 대표자는 2019. 2. 12. 피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제출(신고)하였다.

□ 양도·양수 신고서 주요 내용

- 사업의 종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차량 양도·양수)
- 양도·양수의 시기 : 2019. 2. 12.
- 양도·양수의 사유 : 경영상 등의 이유
- 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 갑(양도인) : 유한회사 ***관광 · 을(양수인) : 주식회사 *****
 - 차량대수 및 매매금액 : 18대 / 일금칠천만원정(W70,000,000)

- 2) 피청구인은 2019. 2. 20. 이 사건 신고에 대해 수리하고 청구인과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하였다.

□ 양도·양수 내용

구분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비고
양도인	(유) *****	***	OO군 OO읍 OO로 00-00	18대 운송사업권 전부 양도양수	
양수인	(주) *****	*** ***	OO군 OO면 OO로 000		

□ 양수인 부대시설

구 분	주 사무소	차고지	면적(㎡)	양수차량	비고
(주)***** (***, ***)	OO군 OO면 OO로 000	OO군 OO읍 OO로 00	2,703	18대	

□ 수리 조건

- 여객자동차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대폐차 기간 초과에 대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됨은 물론,
- 그 외 양도인에 기인한 사유로 발생하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됨을 분명히 인지한다.

- 3) 이 사건 전세버스 사무실 임대인 청구 외 ***는 2019. 7. 18. 임차인(이 사건 전세버스 대표)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임대계약을 해지’ 하였고, 차고지 임대인 청구 외 ***은 임대한 차고지에 주차를 한 대도 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들어 ‘임대계약을 해지’ 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과 피청구인 및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하였다.

- 4) 피청구인은 2019. 7. 30. 청구인 등 이 사건 전세버스 대표에게 ‘여객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를 알리고 2019. 8. 21.까지 청문 실시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하였고, 이 사건 전세버스 대표는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 제출한 의견 내용

- 저희 *****은 2019. 2. 12. *****과 여객자동차법의 등록기준에 맞게 전세버스 10대를 이전 받는 조건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매매하기로 약속하고 매매계약서를 쓴 후 매매대금을 치렀다.

- 하지만 현재 *****에서 차량을 3대만 이전시키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이전을 해주지 않고 있어 계약 내용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와중에 처분 사전통지 안내를 받게 되었다.
 -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을 최대한 빠른 시일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대수 기준(10대)에 맞게 차량을 구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다.
- 5) 피청구인은 2019. 8. 26.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법 위반(등록대수 미달)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통보하였다.
- 행정처분 통지서
- 위반사항 : 여객자동차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처분내용 : 사업등록 취소
- 6) 청구인은 2019. 10. 2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0. 23. 이에 대해 인용결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여객자동차법 제5조제1항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면서 제2호에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 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면서 제7호에 “제5조·제29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이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은 “처분 관할관청은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3에서 2. 개별기준 가. 제7호 나에 따르면 “법 제5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자동차 대여사업의 면허기준이나 등록기준 중 운수

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등 부대시설 기준(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면허기준이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1차 위반 시 사업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자·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3에서 등록기준 대수는 광역시의 군을 제외한 군 단위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경우 10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2) 청구인이 이 사건 전세버스가 여객자동차법에서 규정한 등록기준 대수인 10대에 미달한 사유가 청구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이 사건 종전 전세버스 대표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것이므로 유예기간 없이 사업등록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3에 따르면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단위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1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등록기준을 미달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 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관련 별표 3에 따르면 “여객자동차법 제5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전세버스는 지역별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인 10대를 확보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관련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제2019-332호,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대상으로 한 ‘2016년 OO면 OO지구 지적 재조사사업 경계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군 OO면 OO리 000-00번지 외 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 아들로 이 사건 토지는 2016. 3. 28.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현황 측량을 실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12. 15. 제1회 OO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OO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경계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한 피청구인은 2018. 10. 15. 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금을 산정하여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보하였는데, 청구인은 2019. 7. 12. 피청구인에게 조정금 1,064,600원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7. 22. 청구인에게 조정금 1,064,6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 수행과정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안내나 통지를 받지 못하다가 조정금 산정 결과를 통지 받은 것이 처음이라면서, 법률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를 따르지 않아 부당·부적법한 행정조치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2019. 10. 2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대상으로 한 ‘2016년 OO면 OO지구 지적 재조사사업 경계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 1) 청구인은 2019년 7월 초순경 이 사건 사업 조정금 산정 결과 재통지(2차) 안내를 처음 받고는 피청구인에게 수용할 수 없다는 민원을 수 차례 제기하였는데, 피청구인은 “본 사업이 완료되면 인접 토지와 청구인 부친 소유 토지에 대한 등기가 완료(2018년 10월)되므로 개인 간에 해결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피청구인은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 2)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어떤 안내나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유일하게 통보받은 것은 2019. 7. 2. 시행한 공문(2016년 OO면 OO지구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 결과 재통지(2차))를 받은 게 처음이다. 이에 따라 지적재조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부당한 행정행위(경계구역 결정, 등기 완료 등)를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인접 토지 소유자 의견대로 경계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어떠한 통보나 알림이 없이 2018년 10월경 등기까지 완료한 것은 개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이고 지적재조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부합하지 않은 부당·부적법한 행정이다.
- 3) 청구인 부친 소유 토지와 인접한 토지 소유자는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1981년경 토지를 매입하여 38년 간 사용하여 왔는데 집을 건축할 때 청구인 부친 소유 토지의 경계면까지 슬라브를 치고 집 주위 통행로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의로 청구인 부친 소유 토지를 침범하여 담장을 쌓아 무단으로 사용하여 왔음이 이 사건 사업에서 밝혀졌으므로 원래 상태의 경계점 복원이 필요하다.

〈보충서면〉

- 4)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 모친에게 공문을 발송(OO광역시 O구 OOO로)하였다고 주장하나, 2017. 7. 25. 이후에는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적극적이고 합당한 행정처리 및 조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유가 없다.
- 5) 피청구인이 제시한 위원회 의결 이유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입회하에 경계가 설정’ 되었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해 어떠한 통지 또는 알림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의 의결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에 포함된 필지별 경계에 대한 경계점을 표시하여 주고 확인시켜 줄 것을 추가적으로 요청한다.

- 6) 조정금을 수령한 이유는 피청구인이 기한 내 수령하지 않을 경우 공탁할 수 있다고 하여 일단 조정금을 수령·확보한 상태에서 이의제기 민원 등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반납하겠다는 생각으로 수령한 것이며 결코 지적재조사 사업 결정을 수용해서 수령한 것은 분명히 아니므로 이 사건 사업에 경계결정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 1) 피청구인은 2017. 8. 31. ‘OO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 예정통지서 송부’ 문서를 청구인의 모친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지적확정 예정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쳤고,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으므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어떠한 통지나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2) 지적재조사법 제14조에 따라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현실을 경계로 경계 설정을 하였고, 이해관계인 청구인 모친과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확정 예정통지와 경계결정 통지를 하였으나 의견제출 기간 내 이의신청을 제출하지 않아 지적재조사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 지적공부 정리하였으므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경계 결정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3)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친에게 안내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OO광역시 O구 ***** 아파트 경비원과 청구인의 모친이 수령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모친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 4) 이 사건 토지는 지적재조사법 시행기간 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경계를 확정된 것은 물론 지적확정 예정 통지서,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 법령

-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8조, 제23조
-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 3) 「행정심판법」 제27조

5. 판 단

가.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2017. 8. 31. ‘지정확정 예정 통지서’를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하였는데 2017. 9. 1. 청구인의 모친이 거주하는 OO광역시 O구 *****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를 수령하였다.
- 2) 피청구인은 2017. 11. 20. OO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지정확정 예정 통지서 (2차)’를 토지소유자에게 송부하면서, 향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60일 이내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확정함을 알렸는데 이 사건 토지소유자 우편물이 반송되어 2017. 12. 14.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였다.

□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7. 12. 6. ~ 12. 26.(20일간)
- 공고장소 :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대상(공시송달 내용)

토지소재지		종전토지			확정된 토지				소유자	공시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지목	면적 (㎡)	증감 (㎡)	주소 (성명)	송달 사유
OO	OO	000-00	임	772	000-00	임	779.9	증 7.9	OO군 OO면 *****(***)	주소 불명

- 3) 피청구인은 2017. 12. 27. OO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

자에게 송부하면서, 이의가 있는 경우 OO군청 OOOO과 지적재조사팀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렸는데 2017. 12. 27. 청구인의 모친이 OO광역시 O구 OOO로 OO에서 등기를 수령하였다.

- 4) 피청구인은 2018. 4. 25. 이 사건 사업이 완료하였음을 군보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2018. 5. 8.까지 관계 서류를 OOOO과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렸다.
- 5) 피청구인은 2019. 7. 2. 이 사건 사업 대상자들에게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산정 결과 재통지(2차)’를 송부하면서, 종전 토지에 비해 면적이 증가한 소유자는 2019. 8. 30.까지 ‘세외수입 고지서’를 납부하여 주시고 면적이 감소한 소유자는 2019. 8. 30.까지 ‘조정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 조정금 수령 통지서

종전토지		확정된 토지			조정결과			조정금액 (원)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지목	면적 (㎡)	증감 (㎡)	㎡당 가격 (㎡)	
조정금 합계								1,064,600
130-17	임야	265	130-17	임야	233.5	감 31.5	37,050 (1)	1,167,070
130-34	임야	772	130-34	임야	779.9	증 7.9	35,000 (1)	276,500
131-25	임야	149	131-25	임야	138.5	감 10.5	33,150 (1/2)	174,030

- 6) 청구인은 2019. 7. 12. 피청구인에게 조정금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7. 22. 청구인에게 조정금 1,064,600원을 지급하였다.
- 7)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법률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를 따르지 않아 부당·부적법한 조치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2019. 10. 2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이 사건 청구의 적법 여부

- 1) 심판청구의 기간에 대해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2) 판례는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고시일 또는 공고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 청구기간을 기산하고, 행정심판의 재결례에서는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개별통지 등에 의하여 당사자가 처분이 있음을 알지 않는 한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을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이 있었던 날로 보아 그때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 3)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2018. 4. 25. 이 사건 사업이 완료하였음을 공고하였기 때문에 처분이 있었던 날인 공고일부터 180일이 지난 2018. 10. 23. 이후부터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아울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9. 7. 2. 시행한 공문에 따라 2019. 7. 12. 이 사건 필지에 따른 ‘조정금 수령 통지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기 때문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90일이 지난 2019. 10. 11. 이후부터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2019. 10. 24.)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역산하여도 90일이 지난 것이 확실할 뿐만 아니라 처분한 날부터 180일이 지난 것 또한 확실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심판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한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행정소송 판결사례



사 건 ○○○○누○○○○○
원 고 ○○○○
피 고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단지계획 및 시행자지정 취소처분과 원상회복명령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산업단지계획 및 시행자지정 승인·고시

- 1) 피고는 2007. 7. 16. 목포시 연산동 0000 일원의 토지에 목포 ○○지방산업단지

(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이라 한다)을 승인·고시하였다.

- 2) 피고는 2007. 10. 26.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의 사업 목적에 ‘선박건조를 위한 조선소 건설, 조선 산업클러스터 구축 및 지역경제 발전 도모’를 추가하고, 원고를 별지 1. 도면 공유수면(면적 : 59,000㎡, 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을 매립하여 8만 톤급의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이하 ‘이 사건 시행자지정’이라 한다)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여 승인·고시하였으며(○○○○ 고시 제2007-000호), 2008. 7. 11. 이 사건 사업의 공법을 변경하고, 사업기간을 2009. 2. 28.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여 승인·고시하였다(○○○○ 고시 제2008-000호).

나. 이 사건 사업의 중단 및 사업부지의 매각

- 1) 원고는 2007. 10. 29. 이 사건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2008. 8.경 자금난으로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 2) 주식회사 ○○중공업(이하 ‘○○중공업’이라 한다)은 2011. 3.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타경0000, 0000(병합), 0000(병합), 0000(중복)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유수면과 바로 연결해 있는 원고 소유의 목포시 연산동 0000-0 공장 용지 1984.5㎡ 외 4필지(이하 ‘육지부’라 한다)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부속 기계기구 등을 매수하였고, 같은 날 그 매수대금을 납부하고 육지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추진대책 강구 통보

- 1) 피고는 2010. 7. 23. 및 2010. 11. 30. 원고에게 ‘원고가 승인받아 추진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이 2008. 8. 이후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비 확보방안 등을 강구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만약 계속하여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위 법률의 규정에 의거 다른 사업자를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산업단지가 조속히 개발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란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 2) 피고는 2012. 4. 2.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기간이 경과하였으나, 경영난으로 인하여 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지 않고 있고, 법원의 매각결정으로 원고의 육지부가 매각되어 사업장 앞 접안시설 확장이라는 당초의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목적을 이루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사업시행자의 구체적인 개발계획 및 자금조달방안 등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할 계획이니 원고는 동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2012. 4. 30.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 3) 피고는 2012. 6. 8.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개발계획 및 자금조달방안 등 대안 마련을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동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이 제출되지 않아 사업승인 취소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실정이고, 이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사업 미추진에 따른 사업승인 취소처분을 할 예정이오니 2012. 6. 29.까지 사업 추진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라. 원고의 변경사업계획서 제출

원고는 2012. 6. 29.경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을 변경하겠다는 취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2. 사업계획 변경내용

1) 사업계획 변경사유

- 육상부 27,000평 임의경매 진행
- 조선시장의 금융위기, 수주물량 감소로 신규 선박 건조 수주물량의 현저한 감소

2) 사업변경 내용

- 사업변경 축소
 - 45,000평에서 18,000평 조선소 건설
-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영업전략 재편성
 - 87K BULK CARRIER에서 신기술 도입을 통한 척당 선가가 3~4천만 불 하는 MEGA YACHT, 10,000톤 이하 부가가치 있는 소형선박을 생산하는 체제로의 전환

3) 사업추진 방향

- 경인운하 개통에 따른 수도권 MEGA YACHT, 1) 부가가치있는 소형선박, 선착장, 부유식 해양구조물 수주 물량의 건조는 BLOCK 및 주요 부품의 제작은 ○○조선소에서 탑재, 조립은 ○○벚길 상가대

4. 조선소건설 계획

- 총 면적 : 18,000평

- 매립공정율 : 45%
- 영업주력 선종 - MEGA YACHT, 소형 선박, 해양플랜트, 구조물제작, 기타
- 조선소건설 예정공정현황 - 매립공사는 2013. 6.까지, 조선소건설은 2013. 12.까지
- 자금투입현황 - 기투입금액 10,500,000,000원, 추가투입금액 35,500,000,000원

마.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3. 7. 1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및 시행자지정 취소를 고시하였다(○○○○고시 제2013-219호).

제목 :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및 시행자지정 취소 통보

1. ○○○○고시 제2007-000호(2007. 10. 26.), 제2008-000호(2008. 7. 11.)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및 시행자지정 승인받은 '이 사건 산업단지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하여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2013. 8. 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및 시행자지정 취소 통보하니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및 시행자지정 취소 고시문 1부. 끝.

○○○○고시 제2013-000호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및 시행자지정 취소 고시

○○○○고시 제2007-000호(2007. 10. 26.), 제2008-000호(2008. 7. 11.)로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구 산업입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및 시행자지정 취소하고, 동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7. 19.

피고

1. 사업의 명칭 : 이 사건 산업단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피고

○ 주소 : 목포시 연산동 0000

3. 사업위치 : 이 사건 공유수면

4. 면적 : 59,000m²

5. 처분내용 :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및 시행자지정 취소

6. 처분사유 : 구 산업입지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가목 위반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해관계인에게 사전통지 절차 등을 생략한 위법이 있음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유수면을 현물출자 받은 ○○○○ 주식회사, ○○○○ 주식회사(이하 ‘○○○○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처분의 이해관계인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 등에게 처분 전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청문 참여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하지 않았다.

2) 청문 절차에 하자가 있음

이 사건 처분 전 실시된 청문기일에 출석한 ○○○은 원고의 임원에 불과하고 원고를 대표하거나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다. 이처럼 원고를 적법하게 대표하거나 대리할 권한을 가지지 않은 ○○○이 참석하여 이루어진 청문 절차는 위법하다.

3)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음

이 사건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완공에 근접한 상태에서 중단된 점, 국가 경제 및 지역경제 육성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은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사업시행자지정을 취소하는 방법보다는 이 사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양수받을 적정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원·피고와 지역 사회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약 327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였는데,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이 사건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의무가 부과되면 100억 원 이상의 원상회복비용이 소요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피해가 막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및 시행자지정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이해관계인에게 사전통지 절차 등을 생략한 위법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는 행정절차법에서 사용하는 ‘당사자등’의 의미에 대하여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또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된 이해관계인’으로 정의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22조 제3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거나 청문을 하려면 ‘당사자등’에게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 등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가 되는 당사자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직권으로 ○○○○ 등을 이 사건 처분의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하였거나 ○○○○ 등이 이 사건 처분의 행정절차의 참여를 신청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 등을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된 이해관계인으로서 행정절차법에서 의미하는 ‘당사자등’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문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당사자등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당사자 등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정하거나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이전인 2013. 5. 24. 원고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위 사전통지서에는 ‘2013. 6. 24.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청문이 실시될 예정이고, 대리인이 청문에 참석하는 경우 청문일 전까지 청문기관에 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던 사실, 2013. 6. 24. 실시된 청문기일에 원고의 직원인 ○○○이 참석하였고,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직원인 ○○○이 원고의 청문관련 일체의 업무에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대표자선정·대리인선임통지서(을 제8호증)를 제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관련 규정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은 원고의

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어 청문기일에 참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앞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목적이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①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이 사건 공유수면을 확보하여 선박건조를 위한 조선소를 건설하고 조선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착공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2008. 8.경 자금난으로 이 사건 사업을 중단하여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대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원고 소유의 육지부가 2011. 3. 18. ○○중공업에 매각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공유수면을 매립함으로써 육지부와 연계할 수 있는 8만 톤급의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를 조성하겠다는 당초의 이 사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 ③ 원고가 2012. 6.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을 축소하는 내용의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변경계획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2013. 6.경까지 완공하고, 남은 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추가로 투입할 비용은 약 355억 원에 이른다는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2013. 7. 19) 위 변경계획서에서 정한 이 사건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고, 갑 제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제1심 증인 ○○○의 증언 및 당심 증인 ○○○의 증언을 보태어 보아도, 2011. 10. 25. 사업자등록이 말소되기까지 한 원고가 355억 원의 추가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④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사업시행자지정을 취소하는 방법보다는 이 사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양수받을 적정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원·피고와 지역사회 모두의 이익을 취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나,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의 사업기간이 경과된 2009. 2. 28. 이후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4년 이상이

경과하였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이행하거나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이 사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양수받을 자가 상당 기간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공유수면의 매립을 통해 달성하려는 위 ①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방법이 반드시 피고와 지역사회에 이익이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약 327억 원을 지출하였고, 그중 이 사건 공유수면의 매립공사비용이 약 195억 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2. 6. 29. 경 피고에게 제출한 사업변경계획서에 의하면 당시까지 이 사건 공유수면의 매립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약 105억 원(나머지 비용은 이미 ○○○공업에 경락된 육지부 부분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이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그 회수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및 시행자지정 취소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위 105억 원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

⑥ 원고에게 공유수면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유수면 중 이미 매립된 부분(인공구조물, 시설물, 흙·돌 등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시킬 수도 있으므로, 원상회복비용이 원고의 손해로 귀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원고의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의 원상회복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당해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과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39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공유수면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을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① 공유수면법 제53조, 제54조는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기한 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매립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자신의 귀책사유로 매립면허가 실효·소멸되거나 취소된 자는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매립면허관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이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는 공유수면법 제54조 제1항에 기초하여 발생하고, 원고가 위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야 비로소 매립면허관청이 공유수면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 원고는 공유수면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게 되는 점, ②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및 시행자지정 취소에 관하여만 사전통지와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갑 제2호증)에는 제목이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및 시행자 지정 취소 통보’로, 이 사건 처분서에 첨부된 고시문 또한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및 시행자지정 취소에 관하여만 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가 공유수면법 제54조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원고가 공유수면법 제54조에 따라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됨을 알리고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서에 원상회복과 관련된 부분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어떠한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거나 법적 불안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상회복명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및 시행자지정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생활법률 상담사례



남편이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다가 3년 6개월 뒤 ‘실종자 찾아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DNA검사를 했더니 남편은 3년 전에 이미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신원미상자로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가출 전 남편이 들어놓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회사는 사망 후 3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은 못 받는건가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 ☞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 ※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구체적인 권리가 되어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중입니다. 보험계약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보험 계약자에게 영화티켓 2장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금품과 같은 특별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금품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의 금품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영화티켓이 위 조건에 해당할 경우 제공해도 괜찮습니다.

◇ 특별이익의 제공 불가

☞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금품(다만, 보험계약 체결 시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넘지 않는 금품은 제외)
-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는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
-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후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그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취득한 대위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하는 행위

☞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 특별이익의 제공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이하에 의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되며, 상황에 따라 위 과징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하여 받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화로 보험가입을 권유하기에 피보험자를 저로 하는 상해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청약서를 별도로 받아 자필서명해야 한다고 하던데, 자필서명이 없는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가입을 위한 청약을 하면 판매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즉시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서를 보내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사망 또는 장애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하거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보험청약서와 자필서명

☞ 보험가입을 위한 청약을 하면 판매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즉시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서를 보내 자필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할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망 또는 장애를 보장하지 않는 보험계약
- 사망 또는 장애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하거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
- 신용생명보험계약 또는 신용손해보험계약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금이 비영리법인에게 기부되는 보험계약



보험설계사가 기존 보험은 중지 않으니 보험 해약을 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보험설계사를 믿고 해약 후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자세히 알아보니 해약한 보험계약이 제게 적당한 보험이었습니다. 새로운 보험을 취소하고 해약한 보험을 되살릴 수 없나요?



보험설계사가 부당하게 기존 보험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당 보험설계사가 속한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의 부활은 소멸한 보험과 새로운 보험 계약의 상대방이 동일한 보험회사일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 보험모집인의 금지된 부당 행위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부당하게 기존 보험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해당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해야 합니다.
- 보험계약의 부활은 소멸한 보험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상대방이 동일한 보험회사일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부활청구를 받은 날(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진단일)부터 30일 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하며 30일 내에 승낙 여부를 알리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을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보험계약자의 부활 청구로 인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및 새로운 보험계약의 취소의 효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발생합니다.

- 기존보험계약의 소멸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수령한 해약환급금의 반환
- 새로운 보험계약으로부터 보험계약자가 지급부금을 수령한 경우 그 반환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료는 6회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했는데, 주돌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제가 계속보험료 3회분을 미납했으므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보험료 미납에 따른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었는데, 이때 보험사의 보상거절이 타당한 것인가요?



보험회사가 보험료 미납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은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또한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에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 피보험자에게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보험료 미납사실과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 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 최고에 관한 별다른 입증도 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해 보입니다.

◇ 보험료의 연체로 인한 해지

- ☞ 보험료가 연체되면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하면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년 2개월 전에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자 보험설계사를 불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 체결 전 남편이 간 기능 이상으로 저 몰래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미 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름전 남편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계약 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 체결한 날로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있습니다.

◇ 계약 전 고지의무

- ☞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는데,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 ☞ 중요한 사항은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을 붙여 계약을 하는 등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게가 어려워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하던 중 특정 보험에 가입하면 대출조건을 완화하여 대출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금융기관보험모집대리점은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 등을 받는 자에게 해당 금융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거나 특정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 행위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하 “대출등”이라 함)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등을 받는 자에게 해당 금융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거나 특정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 대출등을 받는 자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않고 보험료를 대출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
- 모집에 종사할 자로 신고된 자가 아닌 해당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 해당 금융기관의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
-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모집에 종사하는 자 외에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상품의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거나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

-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 대출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을 말함)의 대표자·임원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 대출과 관련하여 차주인 중소기업,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에게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해당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상품의 특성·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였다가 보험료를 납입할 여력이 안 되어 보험계약을 해지하려 합니다. 제가 가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과 같이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서 이 경우 그 타인 즉 남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의 임의해지

- ☞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일 경우(예를 들어, 책임보험), 보험계약자는 사고발생 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 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 ☞ 보험계약의 해지 후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지하지 않더라도 파산선고 후 3개월을 경과하면 보험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부인이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던 중 1년 후 남편이 보험계약 사실을 알고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나요?



타인의 생명 보험이 아닌 질병이나 상해만 보장하고 보험수익자를 남편으로 하는 경우, 이를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하고, 이 경우 타인의 위임(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는 내용에 대한 동의대리권의 위임으로 해석)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수익자인 남편에게 의무는 지우지 않고 권리만 제공하는 것으로 남편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손해보험에서의 타인) 또는 보험수익자(생명보험에서의 타인)가 보험계약 체결사실을 몰랐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어 보험회사가 보험료 반환요구를 거절한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타인의 생명보험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동의는 서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타인이 반드시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보험청약서에 타인의 서명을 대행하는 것과 같은 경우도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가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성립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 타인을 위한 보험

☞ 타인의 생명 보험이 아닌 질병이나 상해만 보장하고 보험수익자를 남편으로 하는 경우, 이를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합니다. 즉 「상법」 제639조에 의거 타인의 위임(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는 내용에 대한 동의대리권의 위임으로 해석)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수익자인 남편에게 의무는 지우지 않고 권리만 제공하는 것으로 남편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청인 A씨는 보험계약 청약 시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청약서에 기재하였으나, 이후 B보험사에서 계약내용 확인을 위해 연락하자 A는 오토바이를 운전한다고 알렸고 일주일후 피신청인은 계약을 불승낙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동 일주일 사이에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통상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보험자의 계약은 승낙거절 되거나 제한적으로 인수되므로,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 전 계약확인 시 A씨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고 사고발생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계약을 불승낙 처리한 것으로 보아 사고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을 거절할 충분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승낙 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과 책임 면책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고가 생긴 경우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다면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청약을 거절할 사유란 보험계약의 청약이 이루어진 바로 그 종류의 보험에 관해 해당 보험회사가 마련하고 있는 객관적인 보험인수기준에 의하면 인수할 수 없는 위험상태 또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서 통상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적격 피보험체가 아닌 경우를 말하고, 이러한 청약을 거절할 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회사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 「손해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한 경우
- 보상하지 않는 손해,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의 무효 또는 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법무
단신**

탄핵 촛불집회 관리하다 돌발성 난청... 경찰 경비부장, 공무상 재해 인정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촛불집회 등 서울시에서 벌어진 집회시위 대응 및 대통령 경호 업무 등을 총괄하다 돌발성 난청이 생긴 경찰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연주 판사는 경찰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9구단866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으로 서울 시내 주요 집회상황 및 경호행사 등에 대한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다 2018년 4월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공무원 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돌발성 난청은 공무 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르게 됐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돌발성 난청과 공무 및 공무상 과로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지난해 9월 “발병 원인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고 소음이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집회·시위 관리, 대통령 및 주요국빈 등 경호업무를 비롯해 서울의 경비·대테러·작전·재해 등 업무를 총괄·지휘했다”며 “A씨가 경비부장으로 재임한 후 이 사건 상병발병일까지 기간에는 대통령 탄핵관련 집회, 평창올림픽 관련 북한고위급 방한 등의 행사가 발생해 대규모 집회 관리 및 엄중한 경호가 다수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상병 발병 당일에는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A씨로서는 더 강화된 경호 업무 준비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긴장의 강도가 과중한 상태였다”며 “이러한 상황은 A씨의 일상 업무에 비해 업무의 강도 등이 과중해 임상의학적으로 질병의 발생 및 악화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약 24시간 이내의 부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그 증명이 있다”며 “공단은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하면서 단순히 ‘돌발성 난청의 의학적 특성’에 비춰 이 사건 상병이 A씨의 근무 환경과 직무 수행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고만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A씨의 체질적 소인, 지병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돌발성 난청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A씨에게 돌발성 난청의 원인이 되는 체질적 소인 내지 지병이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별다른 자료도 찾을 수 없다”며 “A씨의 돌발성 난청은 공무 수행 중에 그 공무에 기인해 발생한 질병에 해당되므로 공단의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근로자가 “1개월분 급여주면 퇴직 하겠다”고 했더라도

사직을 권고받은 근로자가 사측에 “1개월분 급여를 주면 퇴사하겠다”는 말을 했더라도 이것만으로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발언이 사측의 사직 중용과 압박 등에 따른 것인지 살펴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A의료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누6558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병원을 운영하는 A법인은 2018년 4월 충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B씨 등을 부당해고했다’는 이유 등으로 금전보상명령을 받았다. A법인이 B씨 등과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A법인은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소송과정에서는 A법인의 B씨 등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A법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인지, 양측의 합의에 의한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해고통보 없이

사무실에서 책상을 빼내버린 상태

재판부는 “A법인 이사장은 B씨 등과 면담을 하면서 ‘병원 사정으로 같이 가기 어렵다’, ‘한 달 시간을 줄테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았으면 좋겠다’는 등의 말을 했다”며 “이에 B씨 등이 스스로 사직서를 쓸 생각이 없으니 해고 통보를 하라고 하자, 이사장은 명시적으로 해고 통보는 하지 않았으나 인사 발령이나 통보 없이 책상을 사무실에서 빼버리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이사장이 사직을 중용하고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B씨 등이 ‘이달 말까지 근무하고 1개월분 급여를 주면 퇴사하겠다’ 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발언은 이사장의 사직 종용, 압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B씨 등이 자발적으로 사직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측의 사직종용·압박 등에 따른 것인지 따져봐야

또 “B씨 등이 요구한 1개월분 급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인 점에 비춰보면, B씨 등의 발언을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B씨 등은 1개월분 급여 등을 받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으나, 이는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것임을 명확히 하면서 A법인이 거듭 요구하는 합의서의 작성을 끝까지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씨 등이 (1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령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됐다고는 볼 수 없다”며 “A법인이 B씨 등을 실질적으로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법인이 B씨 등에 대해 한 해고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B씨 등은 A법인으로부터 사직 권유를 받아 ‘1개월분 급여를 추가로 지급 받고 퇴사하겠다’ 는 제안을 했다”며 “A법인이 이를 수용했으므로 A법인과 B씨 등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됐다”며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선 침범차량에 사고... 무단보행자 책임도 35%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야간에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다가 벌어진 사고였다면 피해 보행자에게도 3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수영 판사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5068250)에서 “B사는 3억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3월 저녁 8시께 전남 무안군의 한 교차로에서 도로를 건너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카니발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뇌내출혈 등 큰 부상을 입은 A씨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인 B사를 상대로 “7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고차량의 운행으로 A씨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사는 보험자로서 사고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판사는 “A씨도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교차로 부근을 무단으로 횡단한 잘못이 있다”며 “사고의 경위 및 전후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A씨의 이러한 잘못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됐다고 할 것이므로 B사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과로로 쓰러진 60대 근로자 11일 요양 후 출근 이튿날 다시 쓰러져 사망은 '업무상 재해'

과로로 쓰러진 60대 근로자가 10여일간 휴식을 취했지만 재출근 이튿날 다시 쓰러져 사망했다면 두 사건의 관련성을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두6260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공장 등에서 주·야간 교대 근무로 PVC 파이프를 포장하고 상·하차하는 업무를 했다. A씨의 업무 패턴은 2주간 휴일없이 연속으로 주간근무를 하고, 2일간 휴식 후 또 2주간 휴일 없이 연속으로 야간근무하는 식이었다.

A씨는 2018년 2월 주간근무를 마친 뒤 숙소에서 휴식하던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근처 병원으로 후송됐다. A씨는 입원을 권유받았으나 개인 사정으로 입원이 어렵다며 거절했다. 대신 11일간 요양했고, 이후 다시 출근해 야간근무를 하다 이튿날에 기숙사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재판부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며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유족패소 원심파기

그러면서 “A씨가 두번째 쓰러진 후 부검은 시행되지 않았지만 그의 병력과 의사 진단을 고려하면 1차(첫번째 쓰러진 사고), 2차(재출근해 두번째로 쓰러진 사고) 재해 모두 지병이 악화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며 “1차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그 후에 발생한 2차 재해는 1차 재해가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돼 발생될 가능성이 많고, 만약 사정이 그러하다면 2차 재해도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2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1차 재해 당시에 망인(亡人)이 객관적 과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망인이 평소 장시간 근무와 장기간의 주·야간 교대 근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업무와 1차 재해 사이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과로나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A씨가 사망하기 직전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고, 평소와 같은 방법으로 항상 담당해오던 작업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전과 달리 업무환경이 변화했거나 업무량, 업무강도가 증가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그가 사망 전 구정 연휴 등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부담 정도가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는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어떤 길로 가느냐’ 택시기사 물음에 욕설·폭행... 만취 40대, 징역형

술에 취해 택시 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고합301).

A씨는 지난 3월 서울 관악구 한 거리에서 택시에 탄 뒤 택시기사 B(61)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떤 길로 가느냐’는 B씨의 물음에 “네 마음대로 가지 그런 것까지 물어보느냐”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가 이에 항의를 하자 운전 중이던 B씨의 옷깃을 잡아채고, 택시가 갓길에 정차한 뒤 먼저내려 B씨가 하차하지 못하도록 운전석 문을 강하게 닫아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와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자칫 대규모 인명 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해 선처를 바라고 있는데다,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홀로 사회에 나와 가족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자립해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술에 취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습벽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수도 황제 접견’ 변호사들 징계는 정당

1심에 이어 항소심도 2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품 회장 등에 대해 선임계를 내지 않고 6개월 동안 1500여회에 걸쳐 접견한 변호사들에게 과태료 등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변호사인 A씨와 B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9누61634)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인 두 사람은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A씨는 정직 1개월, B씨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 전 회장 등 특정 수용자를 10회 이상 접견하는 등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남용해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수용자들을 반복적으로 접견하기는 했으나 정당한 접견교통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했다.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는 A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태료 1000만원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고 B씨의 이의신청은 기각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고,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남용하는 행위는 교정질서를 혼란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사법 및 법조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징계가 필요하다”며 “A,B씨에 대한 징계 양정이 과중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확정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11월 제시한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 기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7706).

김씨는 2015년 10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고 2009년 침례를 받음으로써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었다”며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의 교리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로 병역을 거부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1월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당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심사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검사는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不)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 이후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병역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사건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

“직장 내 따돌림 가한 상급자 해임은 정당”

직장 내 따돌림을 가한 상급자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년 동안 지속해 후임을 공개적으로 질책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을 유포·비방하는 등 관계적 우위를 이용해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군인공제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6두5604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군인공제회 직원 A씨는 2013년 3월 사직하면서 사내게시판에 상급자인 B씨 등을 지칭하며 약 1년간 자신을 비방하고 헐뜯었던 B씨 등의 행위를 지적하고 자신에 관한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퇴직 인사 글을 올렸다. A씨는 또 B씨 등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투서행위를 하고, 따돌림을 조장하는 등 괴롭혔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군인공제회는 B씨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했고, 2013년 4월 B씨 등에게 ‘개인정보 불법취득, 집단 괴롭힘 등 위반’ 등 징계 혐의 사실을 통지했다. 이후 B씨 등은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했지만 해임당했다. B씨 등은 “해임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B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반발한 군인공제회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 등은 A씨보다 상위 직급자이자 재직기간 및 나이 등이 더 많은 사람으로, 신규 전입한 A씨에게 약 1년간 지속적으로 공개 질책 또는 무시하는 언동을 하거나 사생활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해 비방했다”며 “인간관계에서의 분리 및 신상 침해를 의도하는 등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및 다수의 우월성 등을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직원 간의 상호 존중 가치에 반하고, 일상적인 지도 또는 조언 및 충고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며 “A씨는 B씨 등의 하급자로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근무환경의 악화로 사직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B씨 등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부당하지 않다”며 군인공제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이전에 집단 괴롭힘 등을 호소한 적 없이 없고, B씨 등의 행동만으로는 집단 괴롭힘이나 따돌림이라 보기 어렵다”며 “팀의 연장자로서 충고한 행위 등을 집단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생활 유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
무
단
신

허위사실 담긴 남의 글 SNS에 1년 넘게 공유... “글 내려달라” 피해자 요청 거부는 명예훼손

허위사실이 담긴 남의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한 뒤 피해자로부터 글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무시한 채 계속 게시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과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920).

C씨는 메모 어플리케이션인 에버노트를 이용해 자신과 교제했던 D씨를 ‘작가이자 예술대학 교수 H’라고 익명으로 지칭하며 ‘술에 취한 상태로 거부하지 못하고 관계가 이뤄졌다. 불쾌했다. 여자들을 만나고 집에 데려와 나체로 사진촬영을 했다. 그는 나를 만나면 폭언을 일삼았다’는 등의 글을 썼다. A씨와 B씨는 2016년 10월 자신들의 페이스북에 C씨가 작성한 글을 공유했다. 그런데 C씨가 쓴 글 내용은 대부분 허위였다. D씨는 A,B씨에게 “원글 내용이 허위이므로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항의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별다른 조치 없이 1년 이상 게시물을 유지하다 2017년 11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뒤늦게 삭제했다. 검찰은 “A,B씨가 C씨가 올린 글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D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D씨는 C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C씨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아 확정됐다.

진위 확인하지 않은 채 게시물 그대로 게재

1심은 “A,B씨가 해당 글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글 자체만으로는 글의 작성자를 알 수 없고, 가해자로 묘사된 사람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원글의 주된 내용은 전부 허위이고, 피고인들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원글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 또한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A,B씨는 C씨를 알고 있었으므로 그에게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게시물을 게재했고, D씨로부터 글을 삭제해달라는 항의를 받고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 없이 1년 이상 게시물 유지하다 뒤늦게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이름 없어도 특정할 수 있으면 명예훼손죄 구성

이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 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해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면서 “원글 작성자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언급된 ‘H교수’가 D씨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A,B씨가 원글과 함께 올린 해시태그 등을 종합하면 A,B씨도 H교수가 누구인지 당연히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D씨에 대한 감정적 비방으로 보일 뿐,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공익 목적의 제보로도 보이지는 않는다”며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공사현장 일용직 노동자 가동연한도 65세”

공사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판단해 일일수입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2월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인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9다219472)에서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해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보았던 종전의 경험칙은 그 기초가 된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지붕잇기공으로 경험직상 가동연한이 만 65세까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심은 A씨의 주장과 달리 인정할 만한 특별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 심리해 가동연한을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2월 21일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2018다248909).

A씨는 B씨 소유의 목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창고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중 지붕이 부서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B씨는 고용주로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가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므로 B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면서 “이와 함께 A씨의 가동연한이 60세인 점 등을 감안해 배상액을 4900여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7월 8일 시행법령] 자동차 튜닝에 대한 안전성이 강화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35호, 2020. 4. 7.,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튜닝 수요 증가에 따라 자동차 튜닝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고, 특히 향후에는 첨단운전보조장치, 자율주행시스템 등 첨단장치에 대한 튜닝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자동차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튜닝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조사·연구 및 장비 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7월 8일 시행법령] 주택 투기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199호, 2020. 4. 7., 일부개정]

개정이유

최근 종합편성채널방송 등의 시청률 증가로 노인학대의 예방·방지 등을 위한 홍보영상 송출범위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보건복지부장관이 홍보영상 송출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자격증이 대여·알선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노인학대 신고의 활성화 및 피해노인의 정보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관련 처벌을 신설·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홍보영상을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의 지상파 방송사업자에서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로 확대하고, 방송사업자는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제2항 및 제4항).

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여,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9조의2제6항·제7항 및 제57조제2호의2·제2호의3 신설).

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55조의4제3호 신설, 현행 제57조제5호 삭제).

[7월 14일 시행법령]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부담 극복을 위해 계약 기준들이 완화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7. 14.] [대통령령 제30834호, 2020. 7. 14., 일부개정]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확산 등 재난, 경기 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및 일정한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등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의 추정가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등에 따라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조달업체를 지원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수의계약 제도 개선

1) 수의계약 사유 추가(제8조제2항제1호,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5조제1항제6호 라목9)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적합성 인증을 한 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2) 수의계약 대상금액 완화(제25조제3항 신설)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추정가격을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전문공사의 추정가격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특정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의 추정가격을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등으로 각각 완화함.

나.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기준 완화

1) 입찰보증금 기준 완화(제37조제1항 단서 신설)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의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서 1천분의 25 이상으로 완화함.

2) 계약보증금 및 공사 이행보증 기준 완화(제51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제51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및 제51조제5항 단서 신설)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서 1천분의 75 이상으로 완화하고,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서 100의 5 이상으로 완화함.

다. 검사 기한 및 계약의 대가 지급 기한 단축 (제64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기한을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계약의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각각 단축함.

[7월 15일 시행법령] 고위공직자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7. 15.] [대통령령 제30831호, 2020. 7. 14.,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내부고발과 관련한 서류 작성 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고발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내부고발과 관련하여 포상금이나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생활에 유익한 법무상식

최근 제정 자치법규



[7월 2일 시행] 전라남도립국악단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 07. 02.] [2020-07-02 조례 제 3228호,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립국악단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9. 20., 2020. 7. 2.)

제2조(위촉) ① 운영위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예술감독, 부감독, 사무장, 단원 및 어린이국악단 객원예술감독, 지도교사, 어린이 단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1999. 9. 20., 2006. 1. 13., 2009. 2. 13., 2016. 8. 1.)
③ (삭제 2016. 8. 1.)

제3조 (삭제 2016. 8. 1.)

제4조(직무대행)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8. 1., 2020. 7. 2.)

1. 예술감독 (개정 2016. 8. 1.)
 2. 부감독 (개정 2016. 8. 1.)
 3. 각 부의 수석단원 중 최고 연장자 (개정 2016. 8. 1.)
- ② (삭제 2016. 8. 1.)
③ (삭제 2016. 8. 1.)

제5조 (삭제 2016. 8. 1.)

제6조(자금운용) ① 국악단의 공연연주 교육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은 일반회계, 보조금, 공연수입금, 교육 실시에 따른 수입금 등으로 한다. (개정 1999. 9. 20., 2016. 8. 1., 2020. 7. 2.)

② 자금의 징수 및 집행은 단장이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회계연도) 자금의 회계연도는 전라남도 회계연도로 한다. (개정 2020. 7. 2.)

제8조(단원급여) ① 상임단원에 지급되는 급여는 본봉, 직책수당, 예능수당, 복리후생비 등으로 하며, 각 용어의 정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7. 1. 5., 2003. 4. 24., 2016. 8. 1.)

1. “본봉”이란 단원에게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2. 13.(별표), 2020. 7. 2.)
2. “직책수당”이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기타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 2. 13.(별표), 2020. 7. 2.)
3. “예능수당”이란 전통 국악의 발굴 전승에 따른 예술 활동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1987. 1. 5., 개정 2004. 12. 31., 2010. 2. 12.(별표), 2020. 7. 2.)
4. “복리후생비”란 단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 그 지급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신설 2003. 4. 24., 개정 2009. 2. 13.(별표), 2016. 8. 1., 2020. 7. 2.)
5. (삭제 2006. 1. 13.)

② 상임단원이 1개월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월 급여 및 제 수당의 전액을 지급하고, 신규위촉 및 해촉 등의 경우에는 월 급여 및 제 수당의 총액을 그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근무 일수에 계속되는 공휴일은 근무 일수에 산입한다. (신설 1989. 3. 27., 개정 2016. 8. 1., 2020. 7. 2.)

③ 복무규정의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결근자에게는 급여일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신설 1989. 3. 27.) (개정 2020. 7. 2.)

④ (삭제 1999. 9. 20.)

⑤ (삭제 2016. 8. 1.)

제8조의2 (삭제 2016. 8. 1.)

제8조의3(업무추진비) (개정 2006. 1. 13.) ① 국악단 대외활동 등을 위해 예술감독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 9. 20., 개정 2006. 1. 13., 2016. 8. 1.)

② 제1항의 업무추진비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06. 1. 13., 개정 2009. 2. 13.(별표), 2016. 8. 1.)

제8조의4(공연수당)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에게 공연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정기 공연 및 수시공연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6. 1. 13., 개정 2016. 8. 1., 2020. 7. 2.)

제8조의5(공연료 납부기준) (조명개정 2020. 7. 2.) 「전라남도립국악단 설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5항의 초청공연에 따른 공연료 납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신설 2006. 1. 13, 개정 2010. 2. 12(별표), 2016. 8. 1., 2020. 7. 2.)

제9조(단원의 호봉운영) ① 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호봉 제도를 운영한다.

② 단원의 호봉은 신규 위촉시의 경력환산에 따라 책정한다. (개정 1988. 12. 31., 2020. 7. 2.)

③ 호봉승급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자로 승급한다. (개정 2006. 1. 13., 2016. 8. 1.)

④ 단원 신규 위촉시의 경력환산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 2. 13.(별표), 2020. 7. 2.)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기간 동안 호봉승급을 시킬 수 없다. (개정 2016. 8. 1.)

1. 징계처분 및 휴직 중에 있는 사람 (신설 1989. 3. 27., 개정 2016. 8. 1.)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6. 8. 1.)

가. 정직: 12개월 (개정 2016. 8. 1.)

나. 감봉: 12개월 (개정 2016. 8. 1.)

다. 출연정지: 6개월 (개정 2016. 8. 1.)

라. 견책: 6개월 (신설 2016. 8. 1.)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은 단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제5항의 승급제한 사유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 확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1989. 3. 27.) (개정 2020. 7. 2.)

⑦ 기타 호봉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6. 1. 13., 2016. 8. 1.)

제10조(명절휴가비 등)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여비를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3. 6 (전문), 2016. 8. 1., 2020. 7. 2.)

제11조(장부비치) 사무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공연대장

2. 비품대장

3. (삭제 2016. 8. 1.)

4. 단원 위촉(해촉)대장

5. 기타 필요한 장부

제12조(기타) 국악단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7월 9일 시행] 전라남도 감사 규칙

[시행 2020. 07. 09.] [2020-07-09 조례 제 3229호,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에대한행정감사규정」,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란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 및 자치사무에 관한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 등”이란 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관”이라 한다)과 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관이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사업본부 포함), 출장소 및 의회사무처
2.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개정 2015.10.1)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도지사의 지도·감독 또는 국·도비 보조를 받는 단체·법인(개정 2015.10.1)
4. 도내 시·군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개정 2015.10.1)

제4조(감사의 종류) ① 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 「공공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실시하는 감사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규제 등 관련 업무 수행에 앞서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감사(개정 2015.10.1)
-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상감사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운용한다.

제5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와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③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일반기준

제6조(독립성 확보)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과의 개인적인 관계 등으로 인해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감사관은 해당 감사담당자 등을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대상의 선정 등 감사활동에 대한 외부간섭의 배제
2.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자체감사의 실시와 감사결과의 처리
3. 외부의 간섭이나 관여 없이 도지사에게 감사 관련 사항을 보고

제7조(전문성 확보)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교육원 등에서 감사교육을 이수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② 감사관은 분야별 감사담당자로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자세) ① 감사담당자 등은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 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담당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감사담당자 등은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관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감사관은 해당 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사 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장 감사계획

제9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과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이미 수립한 감사계획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의 주기 및 생략) ① 도지사는 제9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며, 종합감사의 주기와 감사기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의 경우 감사인력과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감사대상기관이 도 및 중앙부처에서 실시한 자체감사활동 등에 대한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을 때에는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9조에 따른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계획으로 통보한 감사기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에 그 사유와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 후 감사기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감사반의 편성과 운영) ① 감사관은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담당자의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를 분장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감사관은 감사반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과 감사의 목적
2.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감사계획의 통보) 도지사는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범위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제13조(감사의 사전준비) ① 감사담당자 등은 제9조에 따른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훈령·지침·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의 기능·조직·인력·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5.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6.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담당자 등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3. 감사대상기관의 위법한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 언론매체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 및 장부 등의 확인

4.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정분야와 관련된 자료와 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중 위법하거나 위법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무에 대한 서류 및 장부 등의 확인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결과 감사대상기관의 사무 처리가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무를 감사대상으로 특정하여 미리 감사일정 등을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의 실시

제14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도지사는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사대상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 감사분야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부여

②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때에는 일시·장소·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15조(실지감사의 실시) ① 도지사는 실지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에게 제12조에 따른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예금·유가증권 등의 시재액을 확인하여 관계 장부와의 일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증거서류의 확보)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받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고 작성자 및 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을 기입 후 날인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확인서 등의 작성)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 및 관계자로부터 확인서, 문답서를 받을 수 있고, 감사대상기관에 질문서를 발부하여 그에 대한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제18조(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 감사의 성질상 감사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필요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에 응한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감사실시 상황보고)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일 감사실시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따른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종합하여 감사관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실지감사 기간 중에 감사사무 분장표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0조(감사 중인 사건의 처리) ① 도지사는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 중인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이 있기 전에 감사대상 기관에서 감사결과와 다른 사전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에 따라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거나 사전조치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지사는 감사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고 증거인멸이나 도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징계사건의 조사개시 및 종료 통보)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에서 지적된 공무원 등의 위법부당행위가 지방공무원법 및 기타 법령 또는 소속단체 등이 정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귀청 한 후 조사개시통보문(예시1)을 작성하여 감사관의 결재를 받아 비위발생기관의 장과 관련자의 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귀청하기 전이라도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 정지 등 신속히 조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출장지에서 감사반장의 명의로 통보하거나 감사관의 결재를 받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개시 통보를 한 사건에 대하여는 징계 또는 문책처분요구서(재심의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의 결정서)를 송부함으로써 조사종료 통보를 한 것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을 제26조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의 시행문에 명기하여 조사종료 통보한다. 다만, 조사결과 징계 또는 문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사종료 통보문(예시2)을 당해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제22조(중복감사의 지양) ① 도지사는 감사원 및 중앙부처의 감사부서가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감사를 할 수 있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23조(감사결과의 도출)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증거를 바탕으로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면서 판단 근거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 감사대상기관의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목적, 수행여건 및 환경
4. 「전라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적용 여부
5.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게 된 동기

제5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24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 도지사는 제23조에 따라 도출된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

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훈계, 경고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 ③ 감사관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④ 실지감사 실시 결과 경미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주의나 시정 등 현지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현지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처분할 목록과 사안별 요구사항을 기재한 현지조치사항을 통보하고 추후 이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의2(감사 처분심의회 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감사 처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신설 2020. 7. 9.)

1. 제24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7. 9.)
2. 제30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7. 9.)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0. 7. 9.)
-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위원은 청렴지원관과 감사관실 소속 5급 공무원 전원으로 한다. (신설 2020. 7. 9.)

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 7. 9.)

④ 심의회는 필요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0. 7. 9.)

제25조(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① 감사관은 감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2. 제도개선 및 모범사례

3. 제24조의 감사결과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4.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

②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게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어문규범에 맞도록 어휘를 선택하고 문장을 서술

2. 이해관계인이나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

3. 내용에 모호함이 없도록 분명하게 서술

4. 논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앞뒤가 맞게 서술

5.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장황하지 않도록 서술

제26조(감사결과통보 및 처리) ①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제24조의 감사결과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

3.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③ 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확인서, 답변서, 문답서를 징구하였으나 감사결과 처분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 중 도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무원의 신분상·재산상 책임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에 관계기관 또는 관련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감사결과의 공개) 도지사는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와 개인 사생활 및 신상정보와 관련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사안, 고충·진정 민원의 처리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감사결과와 사후관리

제28조(감사결과의 조치 및 이행결과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6조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60일 이내에 이행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때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이행결과의 확인) ① 도지사는 제26조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게 처분한 감사결과의 이행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재심의 신청과 처리) 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25조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신청을 받은 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

2.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자료의 요청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가 완료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⑥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도지사가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31조(직권 재심의) 도지사는 제26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제32조(비위혐의자 직위해제) 감사관은 소속 공무원이 부패행위로 인하여 사법 기관에 의해 기소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직위해제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3조(외부기관의 수감동향 및 범죄사실 등 보고)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 및 중앙부처 감사기관, 검찰·경찰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을 경우에는 그 동향을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의 횡령·망실·훼손 등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③ 제2항의 보고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포상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 중 행정능률 향상, 예산절감, 적극행정 등의 결과로 인하여 뚜렷한 업무공적 또는 모범사례가 확인된 경우
2. 자체감사활동 등의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제35조(진정민원의 처리) ① 감사관실 소관으로 접수된 진정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실여부 확인이나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정민원은 민원으로 처리하지 않고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반려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1.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2. 수사·재판·형집행 중이거나 감사 기관 등의 감사·조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행정소송, 심판청구,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6.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진정민원에 대하여 반려조치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감사증빙서류 등의 보관) ① 감사와 관련한 확인서, 문답서, 감사증거 등 증빙서류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등은 「공공기록물관리예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별표 1 “기록물의보존기간별 책정기준”에 따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히 보존기간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안 별로 감사관의 결재를 받은 후 보존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37조(감사 관련 서식 및 대장) 감사의 실시와 관련한 서식 및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일 감사실시 상황보고(별지 제1호 서식)
2.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3. 문답서(별지 제3호 서식)
4. 질문서(별지 제4호 서식)
5. 답변서(별지 제5호 서식)
6. 현지조치요구서(별지 제6호 서식)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별지 제7호 서식)
8. 재심의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9. 질문서 발부 상황부(별지 제9호 서식)

생활에 유익한 법무상식

솔로몬의 재판

위성방송 사업자의 서비스기사도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바다회사는 하늘회사로부터 상품 영업, 장비 설치, 유지보수(A/S)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로, 위성씨는 바다회사로부터 장비설치 업무 등을 배정 받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고객의 지붕에서 안테나 위치 수정 작업을 하다 추락하여 오른쪽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위성씨는 사고가 산업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바다회사는 “위성씨는 업무를 재위탁받거나 하도급 받은 개인사업자”라며 “우리 회사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양승인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위성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1. 바다회사 : 위성씨는 업무를 재위탁받거나 하도급 받은 개인사업자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위성씨와 우리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위 성 씨 : 전 바다회사에서 제공한 PDA로 배정된 업무를 처리했고, 그날 일을 다 끝내지 못하면 급여에서 수수료가 공제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사업자라니요. 전 바다회사의 근로자입니다!

☞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은 2번. 위성씨: 전 바다회사에서 제공한 PDA로 배정된 업무를 처리했고, 그날 일을 다 끝내지 못하면 급여에서 수수료가 공제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사업자라니요, 전 바다회사의 근로자입니다! 입니다.

어떤 역무 또는 작업은 직원을 뽑아서 할 수도 있고, 도급계약을 통해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작업을 발주하는 입장에서는 전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와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본 건 사안은, 위성방송사업자의 설치 업무를 수행해온 위성씨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노무 제공의 장소와 시간을 결정하고, 노무 제공에 필수적인 장비를 제공한 측이 바다회사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도급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사용자·근로자 관계라고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한 형태의 근로종사자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서비스기사 간 근로계약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도 않았고, 출퇴근 시간도 보고되지 않았으며 직영기사와 달리 차량, PDA, 유류비 등을 제공받지 않은 점으로 보아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고 하여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8. 11. 30 선고 2018구단62259 판결).

이와 달리 항소심 법원은 “PDA를 통해 업무 처리과정을 보고하였고 배정된 업무를 당일에 처리하도록 일방적으로 통지하였으며, 배정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급여에서 수수료를 공제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서비스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 7. 24 선고 2018누77977 판결).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원고는 PDA를 통하여 이 사건 서비스 기사의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을 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서비스기사의 업무지역은 원고의 결정에 따라 변경되었고, 이 사건 서비스기사는 통상적으로 오전 9시부터 배정된 업무를 당일 처리하여 적어도 오후 6시가 지나야 업무시간이 종료되었으며, 이 사건 서비스기사가 업무를 수행한 장소는 원고가 PDA로 배정한 고객의 자택 및 사무실 등이었던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서비스기사는 원고가 지정한 근무 시간 및 장소에 구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서비스에 필수적인 안테나 및 수신기 등 고가의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이 사건 서비스기사는 배정된 업무를 제3자를 고용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없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서비스기사는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독자적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었던 점, ⑤ 이 사건 서비스기사는 고정급을 받지 않는으나, 성과와 무관한 사후 유지보수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어느 정도 고정급으로서의 성격이 있는 금원을 지급받은 점, ⑥ 이 사건 서비스기사는 원고에게만 전속하여 서비스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서비스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따라서 위성씨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